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1 선고 2018가단70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A 주식회사

2. B

변론 종결2018. 5. 25.

판결 선고2018. 6. 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,760,725원 및 그 중 779,343,986원에 대하여 2017. 11. 29.부터 2018. 1. 15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피고 A 주식회사 : 다툼 없는 사실

피고 B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 본문

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고종영

별지